

의안번호	2210679
의 퇴 인	조승환의원
회 답 일	2025.6.25.
추 계 번 호	25D306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마을기업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2,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9억 9,300만원(연평균 1억 9,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종합계획 수립, 중앙마을기업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마을기업의 날 행사 실시 (안 제6조, 제9조 및 제15조)	329	166	166	166	166	993	199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마을기업 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수행함	의무규정
2	안 제7조(시·도지원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함)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시·도별 지원계획(이하 “시·도지원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함	의무규정
3	안 제8조(실태조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도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9조(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5	제 10 조 (시 · 도 마을기업지원위원회)	-시·도지사는 시·도지원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 등을 위하여 시·도에 시·도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 -시·도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재량규정
6	안 제12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및 제13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요건을 갖춘 자를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제공,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5조(마을기업의 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일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재량규정
8	안 제17조(마을기업지원센터)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8조(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역자원의 조사, 사업의 발굴, 마을기업과 주민 간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관할 지역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9조(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21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
2	안 제7조(시·도지원계획의 수립 등)	-	미대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안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의 예산과 인력 내에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안 제8조(실태조사)	-	미대상: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¹⁾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보조사업 점검 시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음
4	안 제9조(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	○	-
5	제10조(시·도 마을기업지원위원회)	×	시·도 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시·도 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 운영경비 등을 추정 곤란
6	안 제12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및 제13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	제정안의 시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²⁾ 에 비해 확대될 사업의 범위, 규모 등을 추정 곤란
7	안 제15조(마을기업의 날)	○	-
8	안 제17조(마을기업지원센터)	×	마을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마을기업지원센터의 규모·위치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 곤란
9	안 제18조(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 등)	-	미대상: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운영 중임
10	안 제19조(포상)	-	미대상: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수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1) 행정안전부는 세부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에 2025년 26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임

2) [참고] 제정안과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의 비교

11	안 제21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에 따른 위탁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6조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종합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
 - 법안이 시행되는 첫해에 수립한다고 가정
- 안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되는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20명이고, 이 중 위촉위원은 14명으로 가정
 -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³⁾으로 가정
 -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15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날 행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유사 사례의 평균예산을 준용함
 - 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 부지침」).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1일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안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6,3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163백만원)⁴⁾을 준용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추계 첫해인 2026년에 비용이 발생

[표 2]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163	0	0	0	0	1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 안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00만원 등 총 7,0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14명의 위촉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

[표 3]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14	14	14	14	14	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자료: prism.go.kr)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90백만원),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27백만원),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98백만원),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37백만원), 2023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65백만원)

다. 마을기업의 날 행사 실시(안 제15조)

- 행사 및 홍보사업 소요 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주요 행사 및 홍보사업 등 예산 평균금액(152백만원)을 준용함

[표 4] 행정안전부 실시 유사 사례 평균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주요 내용
국민안전의 날	131	국민안전의 날 및 안전주간 운영,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승강기 안전주간	144	승강기 안전주간 행사, 승강기 안전교육
기록의 날	86	기념행사 및 기록사랑 공모전
자전거의 날	245	기념식, 안전체험교실 운영, 경진대회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서 발췌

- 안 제15조에 따라 마을기업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5,200만원 등 총 7억 6,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마을기업의 날 행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마을기업의 날 행사 실시 (안 제15조)	152	152	152	152	152	7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2,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9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종합계획 수립	163	0	0	0	0	163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 설치·운영	14	14	14	14	14	70
마을기업의 날 행사 실시	152	152	152	152	152	760
합 계	329	166	166	166	166	9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 제정안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비교: 재정수반요인을 중심으로

□ 제정안과 현재 사업의 비교

- 현재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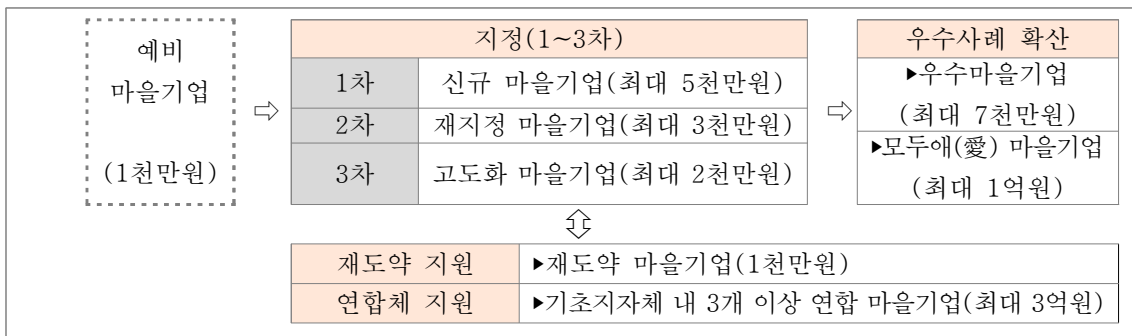
구 분	제정안	2025년 시행지침
마을기업 지원	(안 제13조) -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 전문인력의 육성 및 마을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시설비 등의 지원·용자 - 부지구입 용자 -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 마을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 사회보험료의 지원	- 사업비 지원 - 판로지원, 교육, 경영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마을기업 육성 추진체계 등	- 실태조사(안 제8조)	- 실태조사(연1회): 사업 추진 점검과 병행
	- 중앙마을기업지원위원회(안 제9조)	- 없음
	- 시·도마을기업지원위원회(안 제10조)	- 없음
	- 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 등(안 제18조)	- 마을기업 지원기관(시·도)
	- 우수 마을기업 포상(안 제19조)	- 우수 마을기업 선정(최대 7천만원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현황

- 사업비 지원
 - (보조금 규모) 최대 3회, 1억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정·지원 체계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